

『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2월 18일

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「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」이 시달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·등록세·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명확하게 함(안 제2조 및 제3조)
-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(안 제7조 및 제16조)
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 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함(안 제10조제2항)
- 「임대주택법」 및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감면대상 및 추정제외 사유를 명확하게 함(안 제11조)
-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과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분리하여 조항을 신설함(안 제12조의2)
- 「화물유통촉진법」에서 「물류정책기본법」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,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23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법」 제182조 제1항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
-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
[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-1131("08.9.24)호 및 경상북도 세정과-12491("08.9.25)호]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과 중 현

○ 본 조례안은

-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“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”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·등록세·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만 감면되도록 구체화 하였고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
- 또한 인용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, 반영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